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정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939

발의연월일: 2025. 3. 14.

발 의 자:이정헌·서영교·박홍배

허성무 • 박민규 • 채현일

박지원 · 김승원 · 정동영

김영환 • 박용갑 • 황정아

강준현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선택약정할인 등 약정방식 및 부가서비스·결합서비스 가입 등에 따라 계약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요금체계가 복잡해지고 있으며, 중저가 요금제 부재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이 제약됨에 따라 이용자의 편익 및 공공복리가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.

이에 이용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제를 고지하도록 하고, 기간통신사업 이용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및 조사에 기반한

분석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 권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32조의20 및 제 32조의21 신설 등). 법률 제 호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20677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의20 및 제32조의2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32조의20(최적요금제의 고지) ① 전기통신역무의 종류, 사업규모, 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전기통신서비스요금, 이용조건 및 이용행태 등을 분석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전기통신서비스요금제(이하 "최적요금제"라 한다)를 알려야 한다.
 - ② 최적요금제의 고지 대상·방법·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- 제32조의21(기간통신사업 이용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등) 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 고 요금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·시행을 위하여 요금, 이용조건, 이 용행태 등 기간통신사업의 이용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 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

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 공개할 수없다.
-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간통신사업의 이용현황에 관한 분석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다.
- 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·절차 및 제4항에 따른 분석보고 서의 발간 방법·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04조제5항에 제4호의2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22. 제32조의20제1항에 따른 최적요금제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법률 제20677호 전기통신사업법 | 법률 제20677호 전기통신사업법 |
| 일부개정법률 | 일부개정법률 |
| <u><신 설></u> | 제32조의20(최적요금제의 고지) |
| | ① 전기통신역무의 종류, 사업 |
| | 규모, 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하 |
| |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 |
| | 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합리적 |
| | 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용 |
| | 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요금, 이 |
| | 용조건 및 이용행태 등을 분석 |
| | 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전 |
| | 기통신서비스 요금제(이하"최 |
| | 적요금제"라 한다)를 알려야 |
| | <u>한다.</u> |
| | ② 최적요금제의 고지 대상ㆍ |
| | <u>방법·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</u> |
| | 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|
| | <u>정하여 고시한다.</u> |
| <u><신 설></u> | 제32조의21(기간통신사업 이용현 |
| | 황에 관한 실태조사 등) ① 과 |
| | 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 |
| | 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정보 |
| | 격차를 해소하고 요금 정책의 |

효과적인 수립·시행을 위하여 요금, 이용조건, 이용행태 등 기간통신사업의 이용현황에 관 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 여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 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 공개할 수 없다.
-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간통신사업의 이용 현황에 관한 분석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다.
- 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·절차 및 제4항에 따른 분석보고서의 발간 방법·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104조(과태료) ① ~ ④ (생략)
 -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다만, 제8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제5호·제6호 또는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인경우는 제외한다.
 - 1. ~ 4의21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5. ~ 17. (생략) ⑥ (생략)